

# 「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개인) 모집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본 공고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의 3가지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반드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중복 신청한 사업 모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① 개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 ②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 ③ 로컬 브랜드 창출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단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 \*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본 공고문의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2p)"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지원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 ('23. 5월~'23. 12. 31 (예정))
- **지원규모** : 총 100개사 내외

#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구분	세부요건
신청 자격	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 <b>소상공인</b>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b>소상공인확인서</b>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3], [별첨4] 참고
신청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별첨4-2] 참고 ② '20~'22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공고번호 : 제2020-171호, 제2020-394호, 제2021-197호, 제2021-351호, 제2022-93호, 제2022-305호

<b>신청 제외대상</b>	<p>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p> <p>*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p> <p>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p> <p>*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p> <p>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p> <p>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p> <p>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p> <p>*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p> <p>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p> <p>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p>
--------------------	--

### 3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대응자금(2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대응자금
<b>비율</b>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b>예시</b>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지원 세부사항 >

비목	비목 정의	집행 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마케팅,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공구·기구, 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홍보영상 등)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연계·우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및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강한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트랙 우대 가점(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소진공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운영비 최대 1억원), 동네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타 부처)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최대 6백만원 이내)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월) ~ 2월 28일(화), 16:00 까지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 1)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제출완료" 후에는 정보 수정 불가, 신청취소 후 재신청 필요)
-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4)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약관동의)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활용자원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23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현황 >

권역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주관기관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 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 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 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 경제혁신센터
포함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2) 사업 신청 시 소재권역의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3)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개명 등은 사전인증 필수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 증빙서류 포함)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li> <li>■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li> <li>■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li> </ul>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li> </ul>

### ◆ 제출서류 유의사항

- 1)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2)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3)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 4)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필요서류 구비완료까지 5일 내외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필수

## 5

##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② 발표평가	③ 최종선정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이상 질의응답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평가 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선정

세부 가점 항목	점수
<b>지역 특구</b> ■ 지역발전특구 소재지([별첨5])를 참고하여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지역 특구 내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 창업 아이템에 해당 특화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1점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발표평가**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별 평가점수가 평가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역성(50)	•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25점
	•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5점
성장 가능성(50)	•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15점
	•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20점
	•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10점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5점

## □ 최종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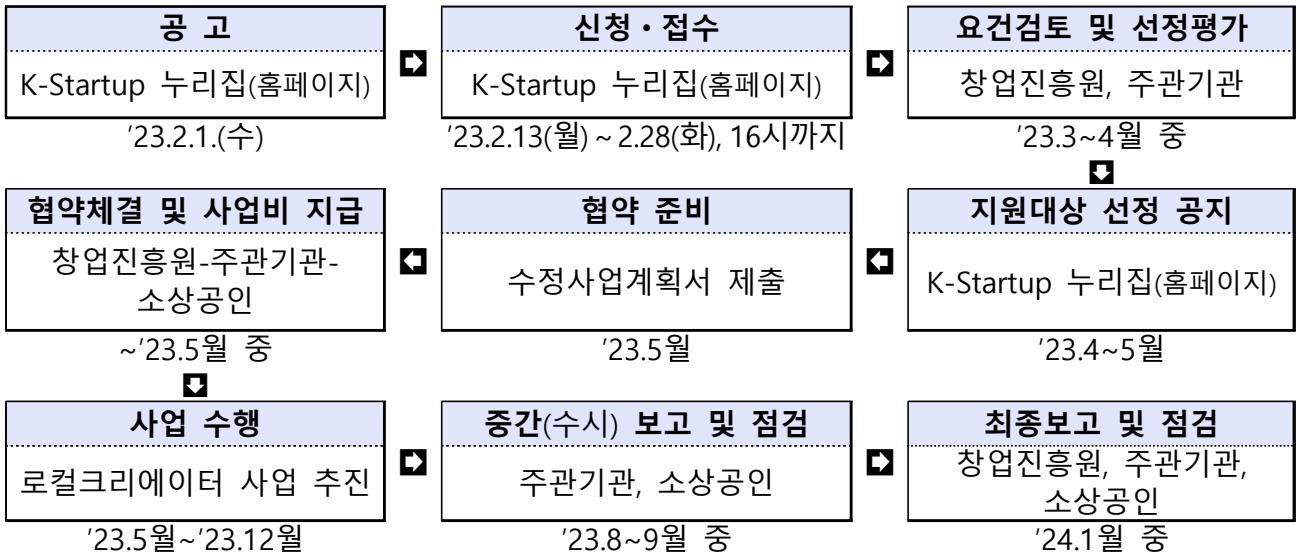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하며,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 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 사업 운영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6

##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소상공인·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 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 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됨
  - 정부지원금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7

## 문의처

### □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문의

☎ 국번 없이 1357

### □ 사업문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 410 - 1885, 1927

○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순번	주관 기관명	연락처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7
		033-248-7944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82
		064-710-1985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인천, 경기)	070-4299-7809
		070-4164-4283
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전북, 광주)	061-661-1942
		061-661-1944
5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054-470-2627
		054-470-2654
6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대전, 충남, 충북)	044-999-1048
		044-999-1042

#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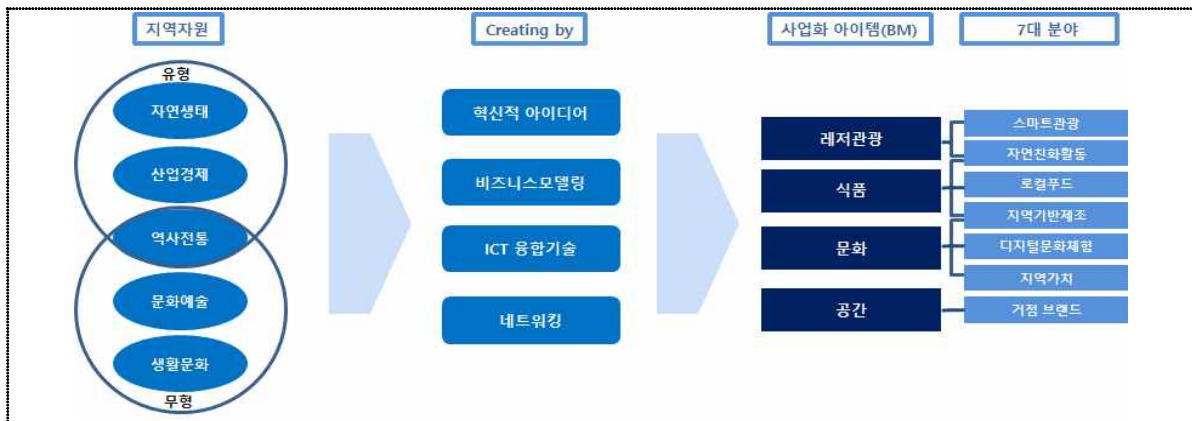
##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 <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 [요건]

- ①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 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